#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53 발의연월일: 2024. 8. 27.

발 의 자: 박용갑·허 영·염태영

임오경 • 박희승 • 이해식

황명선 • 박홍배 • 한민수

안규백 · 강유정 · 안호영

한병도 · 노종면 · 조인철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누구라도 눈 깜짝할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희생자로 전락할 수 있지만,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, 딥 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음.

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그럴듯한 가짜정보,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,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확인시키고 있음.

언론보도에 따르면,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·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,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, SNS 등에 '피해 학교 명단'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은 족히 넘어 혹시나 '내

사진 혹은 내 자녀 사진도 이용된 것은 아닌지'하는 공포심 또한 커지는 분위기임.

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 못지않게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도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임. 피해자는 수치스러움을 넘 어 인격적 살해를 당하게 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혹시 주변 사람 이 볼까 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·정신 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음.

이에 포털, 동영상·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·합성·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

또한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, 합성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,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, 교육·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11 신설 및 제44조의7·제70조).

#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·합성·가공·저장한 정보

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조의11(합성 영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) 방송통신위원 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다른 사람 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만든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- 1.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
- 2. 합성 영상 유통 실태 파악
- 3. 합성 영상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
- 4.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
- 5.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

6. 그 밖에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제70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과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4항까지"로 한다.

- ③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④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·합성·가공한 정보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	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			
등)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	등) ① (현행과 같음)			
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			
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				
여서는 아니 된다.			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			
<u>&lt;신 설&gt;</u>	2의2.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			
	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			
	대상으로 한 촬영물・영상물			
	또는 음성물을 편집ㆍ합성ㆍ			
	<u> 가공ㆍ저장한 정보</u>			
5. ~ 9. (생 략)	5. ~ 9. (현행과 같음)	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	
<u> &lt;신 설&gt;</u>	제44조의11(합성 영상으로 인한			
	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) 방송			
	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			
	신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			
	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			
	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			
	나 결합하여 만든 합성 영상의			
	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			
	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			
	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			

제70조(벌칙) ①・②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- 1.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
- 2. 합성 영상 유통 실태 파악
- 3. 합성 영상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
- 4.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

  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

   진
- 5.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
- 6. 그 밖에 합성 영상의 무분별 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- 제70조(벌칙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
  - ③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④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 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 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

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는	음성	물을	편집	• ট্	감성	• 가	공
• 7	저장힌	· 정]	보로	다	른 ᄼ	나람	<u>의</u>
<u>권</u> 급	믜를	침해형	한 ス	는	7년	0]	<u>하</u>
의	징역,	10년	०) त	하의	자	격정	기
또늯	= 72	천만원	<u> </u>	하의	의 특	벌금	— 에
처형	 한다.						
5	 제1형	}부터	제4	4항7	가지-		

-.